

의안번호	2217000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6.3.24.
추계번호	26C1007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안전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6억 9,400만원(연평균 7억 3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 (안 제14조의2)	387	486	609	765	959	3,206	641
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회계(안 제14조)	94	96	98	100	102	488	98
합 계	481	581	707	864	1,061	3,694	73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(제2항) 7. 제8조의4에 따른 환자안전조사기구의 운영 및 조사 역량 강화 방안 8. 제1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4 (환자안전조사기구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조사기구(이하 “조사기구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조사기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(제1항) ○ 조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1.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조사 및 원인 규명 2. 환자안전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·시정 및 개선 권고 3. 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소통 지원 4.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의 개선안 제언 5. 환자안전사고 조사 관련 연구·개발 및 조사인력 교육 6.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구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(제7항) ○ 조사기구의 설치 또는 지정·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제8항)	
2	안 제18조 (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보건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(이하 “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(제1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급한 보상금의 범위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.(제2항) ○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·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구상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19조 (환자안전기금의 설치)	○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한다.	의무규정
4	안 제20조 (기금의 조성 및 용도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(제1항) 1. 정부의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수익금 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○ 기금은 환자안전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21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	○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(제1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환자안전사고보상사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(제2항) ○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 (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)	×	○ 미대상 - 환자안전종합계획에 환자안전조사기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기존 연구용역비 내에서 수행 가능함(“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(2023~2027) 연구용역비 2억 5,000만원 편성)
2	안 제8조의4 (환자안전조사기구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19조 (환자안전기금의 설치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안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할 경우 계정 간 이동으로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. 다만, 안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,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비례해서 증가할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국고지원금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4	안 제20조 (기금의 조성 및 용도)		
5	안 제21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향후 실제 사업의 내용, 범위, 방법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(안 제14조의2)
 - 본 추계는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환자안전사고 조사를 위탁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조사 비용 전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개정안 제8조의4는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안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(조사 및 원인규명, 소통지원, 연구·개발 등)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나, 기구의 형태·규모 및 개별 사업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본 추계는 환자안전조사에 따른 직접 비용만을 산출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에 해당하며, 조사 대상 기관 수와 조사 단가의 곱으로 추계¹⁾
 - (조사 대상 기관 수) 2025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 49건에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연평균 증가율(23%)를 반영하여 추계²⁾
 - (조사 단가)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준용하여 전문가 자문, 조사 수당, 여비 등을 포함한 조사비용이 2026년 기준 기관당 63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

1) 본 추계는 조사 업무 실시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 또는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음. 참고로, 현재 중앙환자안전센터는 '환자안전 현장지원'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의무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의 원인 분석,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. '환자안전 현장지원'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'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'(내역사업)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인프라 조성에 10억 5,000만원,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비로 2026년 기준 8억원,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비 21억 3,500만원을 편성하였음

2)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'22년 84건, '23년 64건, '24년 47건 등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 다만,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증가율을 반영하되, 2026년은 2025년과 동일한 49건으로 가정

-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(2027~2031년) 총 32억 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조사 사업비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조사 대상 기관 수(A)	60	74	91	112	138	-	-
조사 단가(B)	642	655	668	682	695	-	-
추가재정소요(A×B)	387	486	609	765	959	3,206	641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

□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21조)

- 개정안에 따른 환자안전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위한 “기금관리비” 사업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준용하여 기금 관리 방법을 가정
 -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직접 관리·운용하며, 2026년 기준 “기금관리비” 사업에 9,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는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일반 수용비,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비(회의실 대여료, 위촉위원 수당 등) 등을 포함하고 있음
- 추계 결과, 추계기간 중 4억 8,800만원 발생

[표 3]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금의 관리·운용 및 회계 (안 제14조)	94	96	98	100	102	488	9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산출한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서를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